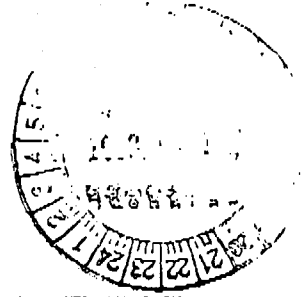


97.12.23



서울고등법원

1997. 12. 23. 원장선고	91
1997. 12. 23. 원판형식	

제 10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7구26892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처분취소

원 고 강 장 회

인천 부평구 산곡동 274 경남아파트 201동 810호

(주민등록상 주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13의 1 동선

아파트 204동 507호)

소송대리인 덕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 홍 기

피 고 정보통신부장관

소송수행자 홍 진 배, 신 진 섭

외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사장 이 계 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양 호, 류 광 현

변 론 종 결 1997. 11.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6. 12.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변호안내서
비스 이용약관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6. 12.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하
다)의 신청에 따라 변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하였고(이하 위 약관을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하고 위 인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이 1997. 1. 1.부터
이 사건 약관을 시행하여 종전의 무료를 유료로 변경하여 변호안내서비스를 하고 있
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전화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변호안내서비스를 무
료로 받다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있고 이 사건 약관이 시행된 후에는 유료로 변호안

내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이용약관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관상 1번호안내당 80원으로 요금을 정한 근거를 피고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돌린 번호를 안내받거나 전화번호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안내원과의 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요금을 받는 점이 부당하며 유료화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의 요금은 적정하고 공정·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3항 제5호는 이용약관은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전화로 번호안내를 받는 요금이 1번호안내당 주화용 공중전화기는 40원임에 반하여 가도 공중전화기, 카도 주화용 공중전화기, 관리 공중전화기는 80원으로서 공중전화기의 기종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3) 번호안내를 유료화함에 있어 참가인은 개인별 전화번호부를 많이 보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한 점이 있다.

(4) 이 사건 약관 제13조는 "한국통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틀린 번호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 통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해당 통화료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참가인에게 유리한 부당한 규정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첫째, 본안전항변으로서, 1997. 1. 31.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참가인이 그 이용약관을 피고에게 신고한 하면 되고 피고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1997. 1. 1.부터 같은 날 30.까지의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의 변호안내서비스를 받고 그 요금을 부담한 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둘째, 본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변호안내서비스의 1건당 원가는 그 요금인 80원을 훨씬 상회하는 230원 정도이고 위 요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여 훨씬싼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의 요금은 적정하고 공정·타당하고, 기존 주화식 공중전화기는 1통화당 요금이 1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계들을 개조하여 80원으로 하려면 개조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개조하는 대신 1998년 상반기까지는 신형 공중전화기로 대체할 예정이며, 잘못된 번호를 안내한 경우에 대하여 참가인의 책임범위를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것은 사업자가 불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

4

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를 인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996. 12. 30. 공포 법률 제5220호, 1997. 1. 31.부터 시행) 제29조는 기간통신사업자(참가인은 이에 해당됨)의 이용약관은 피고에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피고의 인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위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관은 위 예외적으로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관은 1997. 1. 31.부터는 위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약관이 피고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1997.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고가 자신이 가입한 전화를 사용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번호안내서비스를 받은 일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공중전화나 다른 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의 요금부담으로 참가인으로부터 번호안내서비스를 받은 일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하되

라도 아무런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성령 원고가 1997.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사이에 공중전화나 다른 전화를 사용하여 원고의 유급부담으로 참가인으로부터 변호안내서비스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인 원고가 원고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다만 간접적·반사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참조), 원고가 변호안내서비스의 유급화 이후 변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고 그 이용이 상제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변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전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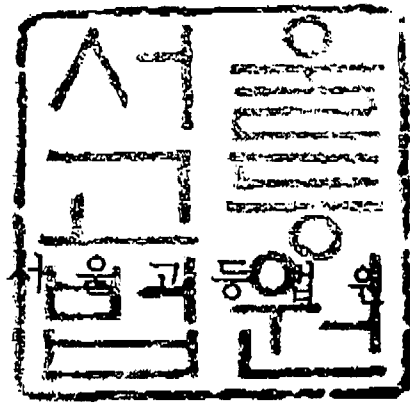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홍 지 훈

판 사 이 충 상

정본입니다.

1997. 12 23
199 년 월 일



법원사무관 류 원 석

